

改正不正競爭防止法 解說(下)

不正競爭防止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다. 不正競爭行爲의 中止請求權등에 관한 規定(第4條)

舊法은 第2條에서 “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權”을, 第3條에서 “不正競爭行爲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改正法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舊法 第2條中の “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權과 舊法 第3條를 統合하여 不正競爭行爲의 中止請求權등”으로 하여 不正競爭行爲請求와 損害賠償 및 信用回復請求등 모든 請求權을 하나의 條文에 統合 規定하였다.

改正法에서 不正競爭行爲의 中止請求權은 舊法과 同一한 內容으로 規定하였으나(同條第1項) 損害賠償과 信用回復에 관한 規定은 舊法과는 달리 表現하였다.

即 舊法에서는 不正競爭行爲者로 하여금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하고(舊法第3條第1項)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代身하여 또는 損害賠償과 함께 營業上의 信用을 回復하는데 必要한 措處를 法院은 命할 수 있도록(舊法第3條第2項) 規定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損害賠償請求와 信用回復請求를 모두 不正 行爲로 因하여 營業上의 利益을 侵害當한 者가 請求할 수 있도록 하였다.

舊法과 改正法間의 表現이 달라진 큰 理由는 損害賠償이나 信用回復을 위한 措處는 窮極의 으로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法院에서 判斷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被害者로서의 最少限의 請求權만을 規定하고 나머지 判斷은 法院의 固有權限에 一任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表現하는 것이 本條의 題目과 一致시키는 表現이기 때문이었다.

라. 適用하지 아니하는 行爲(舊法第4條)의 削除

舊法은 商品의 普通名稱 去來上 通常 同業種商品에 慣用되는 標識, 去來上 通常同種의 營業에 慣用되는 名稱 其他의 標識, 自己의 姓名을 善意로 使用하는 行爲등은 第2條(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權) 第3條(不正競爭行爲의 損害賠償責任) 第8條(罰則)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行爲등은 社會通念上 當然한 것으로 判斷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이번 改正時 削除하였다.

마. 外國人에 대한 適用의 例外(第8條)

舊法은 外國人으로서 國內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두지 아니한 者는 條約 또는 이에 準하는 別段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등을 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바꾸어 表現하면 外國人으로서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있거나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없더라도 條約등에서 外國人에게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있는 것과 같은 效力을 認定하게 되면 不正競爭行爲 中止請求등을 할 수 있다는 規定이다.

이 條文의 趣旨은 바로 파리協約 第2條(同盟國 國民에 대한 內國民待遇) 第3條(一定分野의 個人에 대한 同盟國國民과의 同一한 待遇)의 精神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改正法에서는



金 應 來
〈特許廳 法務官〉

目 次

- I. 法改正의 背景
- II. 不正競爭防止를 위한 國際的 動向
- III. 法改正의 主要內容
- IV. 맺 는 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複雜한 表現을 쓰지 않고 外國人으로서 파리協約 當事國안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의 者는 不正競爭行爲의 中止請求등을 할 수 없다고 明瞭히 規定하였다.

바. 다른 法律과의 關係(第9條)

舊法은 第7條 “無體財產權行爲에 대한 適用的 除外”에서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 또는 商法中 商號에 關한 權利行使 即 이들 法에 의한 正當한 權利行使일 경우에는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보지 않고 또 이러한 行爲에 대하여는 不正競爭行爲 中止請求나 損害賠償責任등에 關한 規定을 適用치 않도록 規定하고 있다.

改正法도 法趣旨의 變更없이 題目을 “다른 法律과의 關係”로 하고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과 刑法中 國旗, 國章에 關한 規定을 追加로 規定하여 不正競爭防止法 施行에서 發生할 수 있는 다른 法律과의 摩擦을 可能的 限 피하도록 하였다.

사. 罰則의 強化(第11條)

舊法은 罰則을 2가지 類型으로 區分하여 規定하였는바 一般의인 不正競爭行爲에 대하여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舊法第8條), 國旗, 國章등의 使用禁止 規定을 違反한 경우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舊法 第9條)하고 있었으나 改正法은 經濟事犯에 대한 財産的 懲罰의 強化趨勢에 따라 自由刑은 2年 以下의 懲役으로, 財産刑인 罰金은 2,000萬원 以下로

大幅 上向하여 經濟秩序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아. 其他 字句修正

其他 條文中 引用條文 및 用語등 字句를 改正法에 맞추는 修正이 있었다.

2. 不正競爭行爲防止를 위한 效率性提高

舊法은 商去來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行政指導를 實施하거나 消費者들의 告發등으로 不正競爭行爲등에 該當하는 行爲를 發見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司法當局에 告發하여 刑事處罰하도록 하는 方法外에는 다른 方法이 없었다.

또한 行政官廳이 不正競爭防止를 위한 行政指導나 啓蒙을 實施하는 過程에서도 指導 및 啓蒙을 할수 있는 明文의 根據規定이 없어 業務遂行의 어려움이 여간 크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가지 困難을 解決하고 不正競爭行爲防止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몇가지 새로운 條項을 新設하였는 바

첫째, 不正競爭行爲防止를 政府가 積極的이고 計劃的으로 實施할 수 있도록 特許廳長 諮問機關인 不正競爭審議委員會를 設置하였고

둘째, 不正競爭行爲에 該當하는 行爲에 대하여는 刑事告發에 의한 處罰이 아닌 是正勸告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是正勸告를 할때에는 當事者나 利害關係人등으로부터 違反事實 與否에 대한 意見을 듣도록 하였고

넷째, 特許廳長의 權限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여 指導, 啓蒙의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는등 制度的인 補完을 하였다.

가. 不正競爭審議委員會의 設置(第5條)

改正法 第5條는 이 法에 의한 不正競爭行爲의 防止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不正競爭委員會를 두고 委員會의 組織 運營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不正競爭行爲가 對內的으로는 國內 經濟秩序와 消費者保護라는 側面에서, 對外的으로는 國際通商摩擦이라는 重大問題를 惹起하고 있어 이런 違反行爲의 防止가 汎國民의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目的에서 마련된 것이다.

全國적으로 蔓延되고 있는 不正競爭行爲를 拔本塞源하기 위하여 指導와 啓蒙을 하기 위하여는 政府의 有關機關은 勿論, 學界, 言論界, 業界 및 消費者保護團體를 비롯한 社會團體등의 意見을 幅넓게 收斂하여 이를 土臺로한 政策의 立案과 施行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根據하여 마련된 不正競爭防止法施行令(以下 施行令이라 한다)은

○ 特許廳에 두는 不正競爭審議委員會(第2條)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10人以上 20人 以內로 委員會 構成

—委員長은 特許廳次長, 委員은 관계 行政機關의 4級以上 公務員 및 不正競爭防止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中 特許廳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도록 하고

○ 委員會의 機能(施제3조)

—不正競爭行爲防止를 위한 綜合對策의 樹立
—不正競爭行爲防止를 위한 是正勸告에 관한 一般的인 處理指針의 樹立

—其他 不正競爭行爲防止를 위하여 特許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였으며

○ 委員會의 會議運營(施제4조)

—委員長이 會議開催 5日 前까지會議의 日時, 場所 및 審議案을 各委員에 通知.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하고

○ 不正競爭防止施策의 樹立 등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機關인 地方不正競爭審議委員會를 두고 地方不正競爭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定하도록 (施제7조) 規定하였다.

나. 違反行爲의 是正勸告(第6條)

앞에서 數次에 걸쳐 言及하였지만 舊法에서는 不正競爭行爲에 該當하는 行爲에 대하여는 司法當局에 告發하여 刑事的으로 處罰하는 것만이 唯一한 方法이었으나, 改正法에서는 不正競爭行爲等이 法을 違反하였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違反者에게 30日間の 期間을 定해서 그 行爲를 中止하거나 標識를 除去 또는 廢棄할 것 등 그 是正에 必要한 勸告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規定의 趣旨은 不正競爭行爲등 違反者에 대하여 劃一的인 處罰만이 最善策이 아니고 違反程度등에 따라 特許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를 選擇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不正競爭防止에 대한 指導, 啓蒙등의 效果를 極大化 시키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特許廳長의 是正勸告에 대하여 이를 履行치 않을 경우 그 事案의 輕重에 따라 告發등 措置가 可能함은 勿論이다.

施行令은 第8條(是正勸告의 方法등)에서 是正勸告는 勸告事由 및 是正期限을 明示한 文書로서 하여야하고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을 確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意見聽取 (第7條)

改正法 第7條는 特許廳長은 是正勸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意見을 들어야한다고 規定하였다.

이 規定은 特許廳長이 是正勸告라는 行政處分을 하기에 앞서 그 違反行爲의 違反程度등을 파악하기 위한 必要的 節次로서 施行令 第9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聽問節次를 詳細히 規定하였다.

—聽問豫定日 7日前까지 是正勸告의 相對方,

利害關係人, 參考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하고
 一通知를 받은 是正勸告의 相對方, 利害關係人, 參考人 또는 그 代理人은 指定된 日時 및 場所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거나 書面으로 意見を 提出할 수 있고

一是正勸告의 相對方, 利害關係人, 參考人, 또
 는 그 代理人이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은 그 要旨를 書面으로 作成하여 陳述한 者로 하여금 이를 確認後 署名 捺印하게 하며
 一聽問을 하고자 是正勸告의 相對方등에게 하는 通知에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示하도록 하였다.

라. 權限의 委任 (第10條)

不正競爭行爲가 全國적으로 發生하고 있고 더욱이 特許廳 所屬의 限定된 人力으로서는 이들 地域全域에 대한 指導, 啓蒙은 不可能한 것이 現實이다.

따라서 特許廳長의 權限中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여 地域實情에 맞는 指導, 啓蒙을 實施케 함으로써 不正競爭行爲를 效率적으로 防止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施行令에서는 特許廳長의 權限中 是正勸告와 意見聽取權限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고 그러나 委任된 權限이지만 不正競爭行爲등으로 因하여 國內, 外 商去來秩序에 심각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權限을 特許廳長이 直接 行使할 수 있도록

하여 不正競爭行爲등에 대한 國家의 拔本意志를 明文으로 밝혀놓았다.

Ⅲ. 맺는 말

地球村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世界는 한없이 좁아지고 있다.

無數한 商品이 洪水같이 쏟아져나오고 그中 우리의 製品도 世界到處에서 그 聲價를 울리며 販賣되고 있다.

製品 하나하나의 品質, 商去來秩序의 確立등은 바로 그 나라의 技術水準과 國民性과 國力에 直結되고 있다.

國內 어느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不正競爭行爲는 나라안의 조그마한 事件만으로 끝나는 時代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不正競爭行爲에 대하여 世界各國은 自國內 立法이나 消費者保護運動, 或은 國際條約, 國際機構 또는 利益團體등을 通하여 不正競爭行爲追放을 위한 監視와 豫防에 온갖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對外依存의 經濟構造를 갖고있는 國家일수록 偽造, 模造行爲와 같은 不正競爭行爲는 우리經濟나 國益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事實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거센 對外的 壓力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世界속에 韓國人의 矜持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不正競爭行爲등은 改正不正競爭防止法 施行을 契機로 徹底히 剔抉되어야 할 것이다. <完>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어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의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